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환경부 공고 제2006-2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2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7779호, 2005년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시행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별표 31]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05조 관련)

기관 출력	정격 기관속도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회전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g/kWh)
130kW 이상	n이 130 rpm 미만일 때	17 이하
	n이 130 이상 2,000 rpm 미만일 때	$45.0 \times n^{(-0.2)}$ 이하
	n이 2,000 rpm 이상일 때	9.8 이하

대통령령 제 19352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환경부 공고 제2006-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2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7779호, 2005년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고자 하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43조 및 영 제46조의2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별표 3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

지 등의 설치대상 범위 및 그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비롯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1호)

- (1) 폐기물발생량이 적어 사업성 및 경제성이 없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 (2)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의 대상범위를 종전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에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로 한정하는 한편, 그 폐기물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함.
-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에 따르는 사업성 및 경제성이 높아지고 현실적 필요성과 부합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제2호나목)

- (1) 중 ·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유해물질의 관리가 어렵고 폐열을 이용할 수 없는 등 경제성이 없음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큰 규모의 소각시설만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 (2) 산업단지 · 공장 및 관광지 · 관광단지의 경우 종전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이 연평균 1일 5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함.
- (3) 소각시설의 사업성 및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각시설의 공동 설치 ·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절차의 보완(안 제3조제3항)

- (1) 인근의 산업단지 · 공장 및 관광지 · 관광단지 간에 소각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경우의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새로이 마련하여 공동 설치 · 운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 (2) 동일 시 · 군 · 구 지역 안의 인근 산업단지 · 공장 및 관광지 · 관광단지 간에 공동으로 소각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정함.
- (3) 소각시설을 보다 경제적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과”를 “각호와”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활용되는 양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다목을 삭제한다.

- 가.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의 그 처리를 위한 소각 시설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의 그 처리를 위한 소각 시설

- 라.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 각호의 1”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를 “폐기물처리시설[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소각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동일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을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소각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제1호?제2호가목 및 제4조제7항중 “퇴비화·사료화시설”을 각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나목중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로 하며, 동조제4항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제3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얻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 또는 증설분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령 제198호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19317호, 2006. 2. 3. 공포, 2006. 2. 3. 시행)되어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을 추가하고, 사업계획등의 통보서 및 사후관리결과 통보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을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항목”을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5조·제26조·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통보, 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항목”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사업계획등의 통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제1항 본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사후관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별표 1 제1호(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 별표 1 제1호파목(1)의 사업으로서 위의 (1) 내지 (7)에 해당하는 사업

별표 1 제1호(9) 및 (10)을 각각 (10) 및 (11)로 하고, 동호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영 별표 1 제1호파목(7)의 사업

별표 1 제2호(1)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1), (2), (5) 내지 (9) 및 (12)의 사업

(3) 영 별표 1 제1호다목의 (1), (2), (3)(라)·(마), (4)(라)·(마) 및 (5) 내지 (7)의 사업

별표 1 제2호(7) 내지 (9)를 각각 (8) 내지 (10)으로 하고, 동호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 별표 1 제1호파목의 (2) 내지 (6)의 사업
별표 1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별표 1 비고 제5호바목의 규정에 따라 복합사업 중 별도로 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은 위 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사업의 환경영향 조사기간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영향 조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년 2월 3일

환경부

1. 의결주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개발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을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추가하고,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등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중 일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하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의 대상 확대(안 제23조제2항 및 안 제24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재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를 평가대상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면적·길이·폭·밀도·용적 또는 용량 등으로 명확히 하고,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하는 경우에도 재협의를 받도록 하며, 협의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업의 대상규모를 100분의 15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의 증가로 확대함.

나. 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 절차 생략(안 제34조의 2 신설)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사업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당시의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30 이내로 변경되며, 소각시설·폐기물매립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추가 (안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등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

가 대상사업으로 추가함.

(2) 종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대상사업이던 「한국 가스공사법」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 5개 개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조정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조정(안 별표 1)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그 대상범위를 종전의 “길이 1km 이상”에서 “길이 4km 이상 또는 철도시설 면적 10만m²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함.

환경부령 제197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환경 및 토양환경 분야 등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평가분야별 평가대행자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요건에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및 토양환경기술사 등을 포함하여 등록가능 자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령 제495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2조제2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3조제4호”를 “영 제3조제7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영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적(전년도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수·보강 실적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제원, 시설물의 증·개축 등 시설물 현황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 ①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시·도지사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의 보고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3(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중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거나 동 서식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다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2항에 의한 실적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동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7조의2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령 제32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고압가스 운반자에 대한 등록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7504호, 2005. 5. 26. 공포, 2005. 11. 27. 시행)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령 제19138호, 2005. 11. 25. 공포, 2005. 11.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인 특정설비대상에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4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 (1) 압축천연가스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및 액화석유가스자동차 정비·폐차시 안전하게 잔류가스를 회수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의 가스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2)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시간당 처리 능력이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함) 및 액화석유가스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를 특정설비대상에 추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4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 (1)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변경등록 대상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2)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 대상범위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등으로 정하고,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 대상범위는 고

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및 수량 변경 등으로 정함.
(3)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안전에 관한 변경사항을 사전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고압가스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용기 등 제조의 재등록 주기를 정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1)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용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재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등록 주기를 정하려는 것임.

(2)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용기 및 특정설비의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용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재등록 주기를 3년으로 정함.

(3)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용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시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불량제품의 국내수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절차를 정함(안 제49조 신설)

(1) 고압가스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신고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고압가스의 종류 및 양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신고인에게 신고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사망자에 대한 지급보험금액 조정(안 제53조제2항제1호)

(1)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지급보험금액이 이와 유사한 액화석유가스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액보다 낮아 형평성의 문제점이 제기됨.

(2)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지급보험금액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동일하게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제8호 · 제9호, 제20조제4항, 제46조제1항제6호,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12 제1호바목 · 사목, 동표 제2호라목(3), 별표 28 제3호 및 별표 29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2호거목 · 머목 및 별표 26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령 제497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안 제11조 ·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이 없어 적정 수준의 실내의 공기 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있음.

(2) 공동주택의 필요 환기횟수는 시간당 0.7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의 경우 필요 환기량을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5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환기 설비기준을 정함.

(3)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공기 질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나. 피뢰설비의 설치기준 강화(안 제20조)

- (1) 연 평균 185회 이상 벼락이 떨어지는 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뢰설비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2) 건축물의 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측면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피뢰설비기준을 강화함.
- (3) 고층 건축물의 벼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을 “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②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신축공동주택등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환기량은 별표 1의3과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 · 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 · 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 · 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 · 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 ·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 · 기기 · 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률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 II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35제곱밀리미터 이상, 인하도선 16제곱밀리미터 이상, 접지극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部材)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제4호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 본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6조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중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5호중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을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